

마당놀이"가 "마당싸움"으로 ?

미추의 마당놀이냐, MBC의 마당놀이냐.
20년 역사의 마당놀이 가 독점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MBC와 마당놀이의 전통 명가(名家)로 각인 된 극단 미추(대표 손진책)와의 결별이 발단이다. 둘은 올해부터 마당놀이 20년 동업을 청산하고 갈라섰다. 양측은 마당놀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결전에 나선다.

미추는 마당놀이 변강쇠전 을 9일부터 서울 정동이벤트홀(옛 문화체육관)에서, MBC는 이보다 일주일 뒤 역시 마당놀이 암행어사 졸도야! 를 장충체육관에서 선보인다. 미추가 이런 독자 행동을 보이자, MBC가 마당놀이에 대한 상표권 을 주장하고 나선 것.

MBC는 최근 미추에게 “마당놀이는 당사가 2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매년 공연을 주최. 방송하여 왔고, 이를 상표로 등록함으로써 법으로 보호 받고 있다”며 사용증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MBC는 “마당놀이 변강쇠전 광고물을 6일까지 폐지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MBC의 이런 태도에 대해 미추는 대단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손대표는 “비록 MBC와 같이 일을 해왔지만, 오늘날 마당놀이의 형태를 예술적으로 완성한 것은 나와 우리 극단의 배우·스태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맞섰다. 또 손대표는 “MBC에게 마당놀이는 담당자의 결정에 따라 존폐가 갈리는 일개의 사업일 지 모르지만 우리는 평생을 해야할 예술”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MBC가 발간한 마당놀이 20년사를 보면, 마당놀이라는 공연 장르의 명칭은 81년 극작가 김지일씨의 제안을 당시 TV제작국 표재순 부국장이 받아들여서 결정한

것으로 돼 있다.

김지일씨는 손씨와 20년 협업을 통해 마당놀이의 형태를 구축한 동지로 이번 변강쇠전 의 작가 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은 예술가의 창의적 영감을 과연 상표권이라는 법적 조치로 구속할 수 있느냐는 법과 예술논쟁 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마당놀이는 국어사전에 나올 정도로 일반화한 보통명사로 특정 단체가 독점할 수 없다”는 주장이 연극계에 강하게 일고 있어, MBC의 이번 상표권 주장이 과연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궁금하다.

출처 중앙일보

애경산업, 행복이 가득한 집' 상표권 소송 승소

애경산업이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3년 넘게 벌여 온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애경산업은 자사가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는 상호를 제품명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잡지사 디자인하우스가 대법원에 제기한 특허법원 판결불복 상고심판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애경은 지난 98년 ‘행복이 가득한 집’이라는 이름의 선물세트와 집들이 용품세트에 대해 상표출원했으나 같은 이름의 잡지를 발행하던 디자인하우스가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3년여 동안 특허관련 소송에 휘말려야 했다.

99년 초 특허청이 애경의 손을 들어줬으나 디자인하우스는 이에 불복, 같은해 6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 패소했다.

디자인하우스는 지난해에도 특허법원에 무효

심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그러나 디자인하우스는 여기에도 불복,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대법원은 특허법원이 내린 2심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애경산업측은 “잡지와 생활용품의 상표가 유사하다고 해서 소비자들에게 특별히 혼동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잡지상표를 모방함으로써 잡지의 인기에 편승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게 판결의 요지”라고 설명했다.

애경산업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선물세트와 집들이 세트를 상품으로 개발해 출시할 것”이라며 “문구가 갖는 친밀감을 최대한 활용해 판촉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세계일보

복제 근절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도안을 무단 복제해 판매,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십자수’는 도안에 따라 십자의 크기를 정한 후 세로와 가로를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수놓는 서양 자수의 일종이다.

출처 문화일보

“방송사 영화 삭제방영은 저작권 침해”

방송시간 제약을 이유로 제작자의 허락 없이 영화의 일부를 삭제, 편집해 방영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돼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채영수·蔡永洙 부장판사)는 ‘빛은 내 가슴에’의 영화 제작사인 A영화사 제작자 이모씨가 “방송사가 영화를 무단편집해 방영,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KBS미디어(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KBS미디어는 이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인공이 십자가를 끌고 가는 장면과 키스 장면, 출연 배우와 스태프 소개 등이 포함된 마지막 장면 등을 방송사가 임의로 삭제 편집했다”며 “이는 영화의 동일성 유지권과 제작자의 성명 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편집이 방송의 공공성이나 기술적 제약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KBS미디어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95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1억원을 지원받아 한국인 최초의 맹인박사 강영우씨의 삶을 그린 ‘빛은 내 가슴에’를 제작, 개봉했으나 방송용 판권을 산 KBS미디어가 96년 12월 방송제한시간을 맞추기

사수 분쟁

최근 젊은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자수의 일종인 ‘십자수’ 도안의 저작권을 놓고 미국 디자인 회사들이 국내 판매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넷 크루즈 디자인스 인크 사(社) 등 미국 ‘십자수’ 도안 디자인 회사 10여개사는 16일 “국내 판매업자들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십자수’ 도안을 무단으로 복제, 싼 값에 판매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내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차모씨 등 17명을 상대로 저작물복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국내 한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 ‘십자수’ 도안 책을 판매하고 있는데도 재료 판매점들이 도안을 무단 복제, 도안당 300~1500원의 싼 값에 판매하고 있다”며 “국내 출판사를 통해 전국 500여개의 판매점에 무단

위해 107분50초 분량의 영화를 90분으로 편집해 방영하자 소송을 냈다.

출처 동아일보

서울지법 “은 사용 바닥재 특허 아니다”

은을 포함시켜 전자파 차단효과를 낸 바닥장식재는 LG화학의 고유한 특허기술이 아니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자파 차단용 바닥재 판매를 둘러싸고 감정대결을 펼쳤던 금강고려화학(KCC)과 LG화학의 법정 특허분쟁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민사지법 제50 민사부(재판장 이공현 판사)는 17일 LG화학이 금강고려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선행특허권을 신속히 인정하기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은을 사용한 적층 바닥재에 대해 LG화학이 실용신안권을 등록했지만 바닥재에 은이 사용됐다는 점만으로 등록고안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 행위로 명백히 단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은이 사용된 바닥장식재 일체의 생산·판매를 제한하는 가처분을 발령했을 때 금강고려화학이 입게 될 손실을 고려해 볼 때 보전필요성을 쉽게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LG화학의 바닥장식재 ‘은하수’에 대해 독자적인 실용신안권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그동안 LG화학의 기술력이 앞섰다고 주장했던 마케팅에 상당한 영향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지난 4월부터 금강고려화학이 은을 소재로 한 바닥재 ‘은하수’를 개발·판매하기 시작

하자 지난해 10월 실용신안등록한 자사 바닥재 ‘좋은 세상’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지난 7월 ‘은하수’ 생산·사용·판매·수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광장이 LG화학, 케이씨엘이 KCC측 법정소송대리인을 맡아 언성을 높이는 등 치열한 소송대리전을 펼치기도 했다.

LG화학은 소장에서 “상대회사 제품이 최하층 및 최상층에 전자파 차단과 항균·방충효과가 있는 은가루를 함유하는 등 본사제품과 구조 및 효과에서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강고려화학은 “바닥재 소재인 은이 정전기 방지와 전자파를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실용신안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정 다툼이 시작되기 전에도 두 회사는 95년 ‘우드피아 - 황토방’, 98~99년 ‘깔끄미 - 청소반장’ 등 소재가 비슷한 제품을 불과 몇 달 차이로 시장에 선보이면서 첨예한 경쟁을 벌여왔다.

출처 매일경제

시프로 값 안 깎아주면 특허 취소 경고

미국의 토미 톰슨 보건장관은 탄저병 치료제인 시프로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독일 제약회사 바이엘이 미국에 만족할만한 수준의 가격에 시프로를 공급해 주지 않을 경우 국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톰슨 장관은 그러나 값을 어느 정도 깎아야 할 것 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하원 정부개혁소위원회에 출석, 바이엘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가격을 제시하지 않으면 미국

이 바이엘의 시프로 특허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 의회에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톰슨 장관은 이날 바이엘 대표들과 만나기에 앞서 이 회사측의 양보를 요구하며 그같이 말했다. 바이엘은 현재 미 정부에 시프로를 1정당 1.83달러에, 미 약품도매업체에는 4.67달러에 팔고 있다. 지난주 캐나다정부는 바이엘의 시프로 특허를 무시하고 아포테스로부터 시프로와 효능이 거의 같은 일반약을 1정당 95센트에 사겠다고 밝혔었다. 바이엘은 그와 관련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가 23일 그같은 입장장을 철회하며 캐나다가 시프로의 특허를 존중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케이준’ 상표등록 대상 아니다 .. 마니커 승소

미국식 음식과 요리법을 뜻하는 케이준이라는 말은 상표등록 대상이 아니다는 특허청 결정이 나왔다. 이에따라 이 용어는 앞으로 누구나 상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마니커는 티에스해마로사(파파이스)를 상대로 특허청에 제기한 “케이준” 상표 등록 무효심판 청구에 대해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특허청은 케이준이라는 용어가 적절적인 요리의 성질을 표시한다고 보고 등록무효를 결정했다고 마니커측은 설명했다.

마니커는 올해초 닭고기 가공 신제품으로 “마니커 케이준 너겟”을 출시했다. 그러자 티에스해마로가 상표등록권자임을 내세워 지난 3월 이 상표의 사용중지를 요청했으며 마니커는 이에 맞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었다.

케이준은 2백년전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 지방에 정착한 프랑스계 이주민들이 스페인, 이탈리아 음식문화 등의 영향을 받아 개발한 음식과 요리법 등을 일컫는 말이다.

케이준요리는 특유의 매콤하고 독특한 맛으로 국내에서도 식품가공업체나 외식업체 등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출처 한국경제

웹 기술 관련특허 무단 도용 대가 지불 주장

한 무명 엔지니어가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노벨,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등 주요 IT 업체들에 대해 자신의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글로벌테크놀로지스의 찰리 노드럽(39) CEO는 이들 업체가 자신의 웹 기술 관련특허를 무단 도용했다며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청했다.

그의 특허는 각각의 컴퓨터 시스템들이 웹에 연결된 서버와 접속해 다양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키는 기술로, 노드럽은 이 개념이 MS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닷넷(.Net) 전략의 핵심을 이룬다고 주장했다. 닷넷은 캘린더나 워드프로세서, 이메일 등 폭넓은 애플리케이션들을 웹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웹서비스의 개념은 수년동안 서서히 논의돼 왔으며, MS와 선 등에 의해 현실화 단계에 와 있다. 이들 회사는 지난 주 각각 콘퍼런스를 열어 자신의 기술이 우위에 있음을 주장했다. 노드럽은 지난 94년 최초로 ‘독립적인 교환을 통한 엑세스 방법’이라는 명칭으로 특허를 신청했으며, 98년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받았다. 노드럽의 주장이 얼마

만큼의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 불분명하지만, 그의 특허는 MS, IBM 노벨 등이 소유하고 있는 각각의 특허기술들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문가들은 노드럽이 이들 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드럽은 이에 대해 “나는 당장에 소송을 제기할 생각은 없다”며 “목표는 내 특허를 보호하고 그들이 무단으로 개발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라는 이름의 게임으로 개발했으며, 이 가운데 아오조라는 지난 4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해 현재 80만명의 누적회원과 8,000명의 동시 사용자를 확보한 상태다.

넥슨도 이달 초 ‘크레이지 아케이드’라는 인터넷 오락실 개념의 신규 온라인 게임 포털 사이트를 개설하고 ‘BnB’를 첫 게임으로 선보였다.

그러나 정작 원작 판권 업체 허드슨은 지난달 온라인 게임 업체 위즈게이트(www.mgame.com 대표 손승철)와 캐릭터 및 게임 시스템 사용 계약을 체결, 양사 공동으로 ‘온라인 봄버맨’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 ‘봄버맨’의 판권 소유업체인 허드슨은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 없이 개발된 국내 유사 게임을 저작권 침해 행위로 보고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파트너인 위즈게이트 측에 따르면 허드슨은 넥슨·아오조라의 게임을 포함해 신해정보통신의 ‘서바이벌 범브(www.ongameline.com)’, 이스트엔터테인먼트 ‘고디붐(godiboom.dream-east.com)’과 시리아소프트(www.siria.co.kr)가 현재 개발 중인 ‘쿨러닝’이라는 타이틀까지 저작권 침해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넥슨과 아오조라 관계자는 “단지 장르가 같은 게임을 모작이라고 한다면 국내 게임 업계에는 창작 게임은 없을 것”이라며 “BnB나 쉐이크만해도 프로그램적으로 전혀 다른 게임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응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실제 이들 업체가 개발한 게임은 모두 ‘봄버맨’의 게임 시스템을 모방한 흔적이 역력해 허드슨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현재 허드슨 측은 한국 내에서의 ‘봄버맨’ 저

월간 게임 “봄버맨” 저작권 논란

리니지를 둘러싼 원작자와 엔씨소프트간의 분쟁, 포트리스를 놓고 벌인 CCR과 넷츠고 분쟁등에 이어 국내 온라인 게임 업계가 또 다시 저작권 분쟁에 휘말릴 조짐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업체 넥슨(www.nexon.co.kr 대표 정상원), 아오조라(www.aozora.com 대표 진가인) 등 유력 게임 업체들이 동일한 일본 게임을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 없이 온라인용으로 개발, 서비스하고 있어 저작권 업체와의 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온라인화한 게임은 일본 게임 업체 허드슨(www.hudson.co.jp 대표 쿠도히로시)이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봄버맨’이란 아케이드 형 게임으로, 게이머가 미로를 돌아다니며 길 중간 중간에 폭탄을 떨어뜨려 놓고 상대방을 제거하는 내용이다. 넥슨과 아오조라는 ‘봄버맨’과 같은 형태의 게임을 각각 ‘BnB(www.nexon.com/kor)’, ‘쉐이크(www.hanpanthe.net)’

작권 문제를 위즈게이트에 일임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 게임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은 위즈게이트의 손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 회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적 대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게임 업계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며 “가능하다면 허드슨으로부터 서브 라이선스 권한을 넘겨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 엔터테인먼트 3사, 소닉블루 DVR 저작권 침해 소송

미국의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3사가 소닉블루의 디지털비디오리코더(DVR)가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비아콤·월트디즈니·제너럴 일렉트릭(GE)의 계열사 NBC 등 3사는 소닉블루가 이달 출시 예정인 DVR ‘리플레이TV 4000’의 자동 TV광고 삭제 기능과 저장한 비디오 파일을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이 제품의 출시금지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이날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닉블루는 MP3플레이어 ‘리오’ 제조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DVR은 기존 비디오 테이프 대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TV방송 프로그램을 실시간 녹화해 TV 생방송 도중 잠깐멈춤 기능을 사용하거나 되돌려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30초 빨리감기 기능을 제공해 사용자가 녹화한 프로그램의 광고 부분을 건너뛸 수 있게 한다.

소닉블루의 리플레이TV는 이같은 기능에다 녹화된 비디오 파일에서 자동으로 광고부분을 삭제하는 기능과 녹화한 디지털 비디오 파일을 다른 리플레이TV 사용자에게 보내는 기능 등이 추가돼 있다.

엔터테인먼트 3사는 이같은 리플레이TV의 새

로운 2가지 기능이 광고와 가입자 수신료라는 2 가지 주요 수입원을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 고소한 것으로 신문은 분석했다.

이에 대해 소닉블루의 켄 포타슈너 회장은 “일반 VCR의 빨리감기 기능과 리플레이TV의 자동 광고 삭제 기능은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사람들은 또한 이미 PC를 통해 비디오 이메일을 주고 받고 있다”며 3사의 저작권 침해 주장에 항변했다.

이와 관련 소닉블루의 최대 경쟁사인 미 티보사측은 “자동 광고삭제 기능은 실현하기 어려운 기술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같은 기능을 첨가해 미디어 기업들과 싸우고 싶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3사의 소송은 미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디지털 콘텐츠 배급권을 장악하려는 일환으로 제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9년 처음으로 DVR이 출시된 이후부터 미 대형 방송사 연합체는 DVR 제조사들에게 라이선스 계약 없이 방송 콘텐츠를 무단사용하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으나 그동안 관련 소송은 없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AOL, 저작권 문제로 6.0 브라우저 디스크 수백만장 폐기 불가피

미국 최대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인 AOL의 최신 전용 브라우저인 AOL 6.0에 수록된 MP3 음악 플레이어인 월앰프가 저작권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수천만달러를 들여 제작한 수백만장의 AOL 6.0 버전 디스크를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31일 보도했다.

허워드 마츠 미 연방지법 판사는 30일 AOL 6.0에 수록된 음악 플레이어 윈앰프가 플레이미디어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의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AOL은 플레이미디어사가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윈앰프를 플레이미디어사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 윈앰프를 판매하고 있는 놀소프트로부터 윈앰프 사용권을 구입해 AOL 6.0버전에 같이 수록해 공급했다.

플레이미디어사는 법원에 소송을 내고 윈앰프라는 제품으로 판매되지 않는 그 어떤 제품에도 윈앰프의 사용을 용인한 적이 없으며, 따라서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을 가한 형태로 공급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며 AOL 6.0의 판매 중지를 요구했다.

AOL은 윈앰프를 아주 부분적으로 손을 본 것 일뿐이라며 놀소프트에서 구입한 윈앰프를 그냥 수록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하워드 마츠 판사는 그러나 “이 두 제품은 서로 다른 제품이라고 할 정도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만큼 AOL 6.0에서는 물론 다른 버전에서라도 윈앰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AOL은 3천900만 달러를 들여 제작한 가입자용 디스크를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할 형편이다.

AOL은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현재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AOL 6.0 디스크만도 400만장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AOL은 이달 초 AOL 7.0 버전을 발표했지만 AOL 6.0 버전을 모두 소화시킨 다음 공급할 계획이었다.

출처 news24

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또 특허권 침해 분쟁에 위말렸다.

전자화폐업체인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경쟁사인 장외기업 스마트로가 지난 5월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전영삼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씨엔씨는 동일업종의 코스닥기업인 케이비테크놀러지와 특허권 침해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극적 합의를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법정소송에 시달리게 됐다. 스마트로는 지난 5월 자사가 취득한 ‘무선정보기록 매체의 다중 엑세스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씨엔씨를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스마트로는 선.후 불 교통카드의 데이터를 인식하는 부품에 관한 이 특허를 지난 98년 8월 출원해 지난해 7월 취득을 완료했다. 스마트로 관계자는 “향후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씨엔씨의 한 관계자는 “스마트로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힌 부품은 특허가 출원되기 전인 지난 97년부터 범용 기술로 개발해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특허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원에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보유 상표를 업종으로 등록”(주)퀵서비스 한통등에 손배소

국내 최초로 오토바이 특송업을 시작한 (주)퀵서비스는 “무단으로 ‘퀵서비스’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업체들의 전화번호를 안내해줘 상표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다”며 한국통신, 한국전화번호부(주), 한국인포서비스 등을 상대로 서비스상표권 침해금지 및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퀵서비스사는 소장에서 “다른 오토바이 특송업체들이 ‘퀵서비스’라는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피고들은 전화번호부와 114안내 등에 이들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 전화번호를 등록,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한국통신 등은 이들 업체를 아예 ‘퀵서비스’라고 분류해 주는 등 상표 도용행위를 방조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오랜 기간 쌓아올린 고유 명성과 영업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측은 “전화 가입자들이 전화번호부에 등록하는 명칭에 대해 회사가 간섭할 권리는 없지만 이것이 상표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법원이 판단이 나온다면 정리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 동아일보

17년산 발렌타인과 스카치블루를 혼동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진로발렌타인스는 “롯데칠성에서 생산중인 스카치블루는 내용물을 담은 상표도안과 병모양이 발렌타인17과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며 지난 8월 가처분 소송을 냈었다.

출처 한국경제

교통카드, 이번엔 멀티 SAM 특허 분쟁

국내 교통카드 시장이 후불제 특허권 분쟁에 이어 멀티 SAM(보안용모듈)을 둘러싼 특허권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이에 따라 버스카드와 지하철 카드간 호환성 확보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화폐 및 교통카드 분야 솔루션 업체인 스마트로(전 리더시스템테크, 대표 이종인 www.smartro.co.kr)는 최근 씨엔씨엔터프라이즈(대표 전영삼 www.cncen.co.kr)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했다.

현재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서울지검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스마트로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씨엔씨가 멀티SAM(무선 정보기록 매체의 다중 액세스 시스템 및 방법)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때문.

지하철에 깔려 있는 씨엔씨의 후불카드(국민 PASS카드) 단말기에 자사의 특허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스마트로의 주장이다. 스마트로는 또 인테크산업, 케이비테크놀러지 등 교통카드 솔루션 업체를 상대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씨엔씨 측은 “스마트로의 특허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대

유명 양주병 디자인 둘러싼 법정 공방, 롯데측 승리

유명 양주병 디자인을 둘러싸고 롯데칠성음료와 진로발렌타인스가 벌인 법정공방에서 롯데측이 승리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0부는 6일 진로발렌타인스가 “본사 제품과 유사한 도안과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며 위스키 “스카치블루”的 생산업체인 롯데칠성음료를 상대로 낸 제품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진로발렌타인스는 세계적 스카치위스키 “발렌타인17”을 생산하는 영국 얼라이드도맥스의 한국법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중간 부분이 불룩한 스카치블루 병은 양주 용기로 흔히 사용되는 것이어서 얼라이드 도맥사가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양주병의 용기나 라벨의 형태에 일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중화된 기술”이라며 “지난 5월부터 특허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스마트로가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기술은 특허 출원 전인 지난 98년 초 개발된 기술로 이미 시제품을 만드는 등 상용화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허 논쟁은 이르면 연내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사법부에서 판결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로의 특허권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 교통카드 시장은 “버스와 지하철을 호환하려면 스마트로를 통해야 한다”는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 누가 먼저 만들었는가 스마트로 특허기술의 핵심은 멀티 SAM이다.

발급자가 여러 개의 RF카드를 하나의 무선모듈(RF 멀티 SAM보드)로 수용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양사는 서로 먼저 관련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마트로 김해곤 부장은 “수년간 개발 끝에 지난 98년 8월 1일에 관련기술을 특허 출원하고, 2000년 8월 3일 특허 등록했다”며 “등록 과정에서 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이의신청을 했지만, 특허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등록된 만큼 특허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씨엔씨는 우리의 특허기술로 282억 5천여 만원의 매출을 올린 만큼 이에 대한 특허료를 받을 계획”이라며 “특허에 대한 권리행사는 씨엔씨, 인텍크산업, 케이비테크놀러지 등 관련된 모든 업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반면 씨엔씨엔터프라이즈 소진수 실장은 “각종 카드를 호환시키는 멀티 SAM기술은 지난 97년과 98년 초 서울대IC카드 연구센터, 인텍크산업, 씨엔씨가 모여 스펙을 정하고 제품개발에 나섰

다”면서 “특허로 등록될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당시 특허 출원하지 않은 것은 호환성 확보를 위해 지적재산권을 설정하지 말자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기술이 출원되기 전인 98년 6월에 이미 시제품을 개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 사건 개요

내용 일자

스마트로 특허출원 98년 8월 1일

스마트로 특허공개 98년 11월 25일

스마트로, 씨엔씨에 특허침해 경고장 발송 99년 10월 1일

씨엔씨엔터프라이즈, 이의신청

스마트로, 특허등록 2000년 8월 3일

스마트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2001년 4월 7일

씨엔씨엔터프라이즈, 특허무효 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2001년 5월

스마트로, 씨엔씨엔터프라이즈 형사 고소 2001년 5월 2일

씨엔씨, 특허법 위반 불구속 기소 2001년 9월 28일

◆ 교통카드 시장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로의 특허권이 최종적으로 인정 받을 경우 후불제 교통카드 뿐 아니라, 선불형 전자화폐 업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버스카드 사업자인 인텍크 산업이나 마을버스에 멀티 SAM을 적용한 케이비테크놀러지 뿐 아니라, 버스와 지하철 카드를 호환하려는 모든 전자화폐 업계가 특허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몬덱스코리아, 비자캐시, 에이캐시, 케이캐

시, 마이비 등 전자화폐 업체들도 표준SAM으로 호환한 후, 교통카드와 RF식으로 호환하려면 스마트로에 특허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로도 관련된 모든 업체에 동일한 수준의 특허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후불제 교통카드 특허권자인 씨엔씨와 신용카드 업계가 특허료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듯, 스마트로의 특허권도 비슷한 양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의 중재여부 또한 중요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 **스마트로는 어떤 회사인가 스마트로는 리더시스템테크가 올 3월 이름을 바꾼 회사다.**

자본금 37억원에 53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

며, 단말기 제조업체 리더시스템과는 계열사 관계다. 현재 LG정유와 함께 IC카드를 이용한 VAN(부가가치통신망)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LG캐피탈과는 전자화폐 시스템 및 운영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멀티 SAM 외에도

- ▲ 판매관리시스템에서의 카드 결제 방법
- ▲ 셀프주유 자동결제 시스템
- ▲ 판매망관리시스템의 판매 요금 지불 방법 등 교통카드 및 스마트 카드 관련 10여 개의 특허를 등록해 두고 있다.

최근에는 ISO 9001 인증을 진행, 가인증서를 받기도 했다.

출처 inews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 7. 20. 99헌마463 (기각)

【불기소처분취소】

【당사자】

청구인 마준호

서울 용산구 보광동 448 신동아아파트 8-1206

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주명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주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8년 형제4281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8. 7. 20.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80의 21 소재 전기보온압력밥솥(이하 '압력밥솥'이라 한다) 제조업체인 대웅전기산업주식회사(이하 '대웅전기'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김용진(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다.

피고소인은 청구인 운영의 주식회사 마마(이하 '마마'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압력밥솥이 대웅전기의 압력밥솥보다 잘 팔리자, 마마의 압력밥솥 매출을 떨어뜨리고 대웅전기의 압력밥솥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해,

1998. 4. 18. 경 위 대웅전기 사무실에서 사실은 마마가 생산하는 압력밥솥은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고 형상을 도안하여 특허청에 특허, 실용

신안 및 의장등록을 하여 생산하는 것으로서, 대웅전기가 특허청에 등록한 실용신안이나 의장을 모방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마마가 대웅전기의 압력밥솥에 관한 실용신안권이나 의장권을 침해한 것처럼 마마의 용산지사 대표인 청구인 이용연 등 약 20개 업체 대표에게 "마마제품은 대웅전기가 등록한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을 침해하고 있는 불법제품임이 명백하다. 귀사는 해당 불법제품을 유통시키면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그와 같은 귀사의 행위는 마마와 동일한 위법행위에 해당되며, 본 회사로서는 귀사에 대해 민·형사상 의법조치할 것이다."라는 협의 내용을 기재한 경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협의의 사실을 적시하여 마마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압력밥솥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8.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9. 8. 5.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

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0.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주심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료를 납부하고 같은 날 등록을 마친 실용신안권자로서 1994. 6. 8. 제4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1998. 7. 20. 제8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한 때까지 매년 법에 정하여진 납부기간 또는 추가납부기간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제9년분의 등록료를 납부기한인 1999. 2. 21.과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인 같은 해 8. 21.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1999. 8. 22.부터는 이 사건 심판대상 법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기산하여 60일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인 1999. 10. 30.에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니,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권성의 반대의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 11.
30. 99헌마624 (각하)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 등 위헌
확인】**

【판시 사항】

실용신안권자의 등록료 납부기간과 등록료 불납에 대한 효과를 규정한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 및 제34조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에 있어서 늦어도 등록료 추가납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는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결정 요지】

청구인은 1991. 5. 17. 제1내지 제3년분의 등록

가. 등록료의 납부 고지나 안내제도 또는 등록 말소 예고제도 등이 법령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에 청구인이 특허청의 통고 등에 의하여 1999. 8. 22.에 등록료 납부기간의 도과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그 밖의 다른 경로를 통하여 위 일자에 그려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일자에 청구인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뒤 청구인이 등록료와 할증료를 납부한 1999. 9. 18.에 즈음하여 비로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청구인이 알았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

따라서 이로부터 60일 내인 1999. 10. 30. 청구된 이 사건 권리소멸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단 1회의 등록료 불납으로 권리의 본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가사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기본권제한 입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피해의 최소성, 법의 균형성 등을 갖추지 못한 것 이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불납사실의 통지 및 권리소멸의 예고,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경우의 권리회복 등 절차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리에도 반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34조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당사자】 청구인 예해금

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피청구인 특허청장

【심판대상조문】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9조 제3항, 제34조 중 “실용신안권자의 실용신안권은 등록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는 부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정형은 “흡착용 자석장치”를 고안하여 1988. 7. 22.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고 1991. 2. 21. 출원공고가 된 후 같은 해 5. 17. 제1내지 제3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하고 같은 날 실용신안등록번호 제56701호로 등록을 마친 실용신안권자이다. 실용신안권자는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년분 이후의 등록료를 출원공고일을 기준으로 매년 그 전년도에 납부하

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1994. 6. 8. 제4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1998. 7. 20. 제8년분의 등록료를 납부한 때까지 매년 실용신안법에 정하여진 납부기간 또는 추가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였으나, 제9년분의 등록료를 납부기한인 1999. 2. 21.과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인 같은 해 8. 21.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그 후인 같은 해 9. 21. 제9년분의 등록료와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할증료를 납부하려 하였으나, 특허청장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실용신안권이 등록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인 같은 해 2. 22.로 소급하여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 27. 청구인의 실용신안권을 소멸등록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실용신안법 제29조 제3항에서 등록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을 산업자원부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제34조 중 실용신안권자의 실용신안권은 등록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는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자신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1999. 10.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실용신안법(1998. 9. 23. 법률 제5577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줄여 쓴다) 제29조 제3항 및 제34조 중 “실용신안권자의 실용신안권은 등록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는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고 그 규정 및 관련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29조(등록료)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실용신안권자는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 중 최초 1년분의 등록료는 실용신안등록출원(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중출원의 경우에는 각각 분할출원 또는 이중출원을 말한다)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와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34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80조 제81조 및 동법 제83조의 규정은 등록료 및 실용신

안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81조 제1항 중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실용신안권자”로 보며, 동법 제81조 제3항 중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의 특허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는 “실용신안권자의 실용신안권은 등록료를 납부할 기간이 경과한 때에 소급하여 그 실용신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본다”로 본다.

특허법 제81조(특허료)

(발특2001/12)

알 릴

2002년도 변화사시험 제도 변경 안내

제1차 시험 및 제 2차 시험 합격은 절대평가제 (각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로 함)

가. 제1차시험 (4과목)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의장법 및 조약 포함),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 영어

나. 제2차시험 (4과목)

필수과목(3) 특허법(조약 포함), 상표법(조약 포함),
민사소송법(강제집행편 제외)

선택과목(I)

의장법(조약 포함), 행정법, 저작권법, 경제원론, 산업디자인,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열역학, 재료공학, 금속재료, 광물처리공학, 선박설계, 유기화학, 무기공업화학, 화학
반응공학, 재배화원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통신이론, 데이
터구조론, 고체물리학,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학, 섬유재료학, 방
적공학, 건축구조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중] 1과목